

##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(1차)

(재)부산테크노파크는 신발산업 (예비)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창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내에 창업공간을 마련하여, 입주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원스톱 신발허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 이에 입주를 희망하는 (예비)창업기업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5년 10월

(재)부산테크노파크 원장

### 1.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시설개요

#### □ 건축개요

항 목	내 용	항 목	내 용
주 용 도	공장(지식산업센터)	건 폐 율	35.02%
지역지구	전용공업지역, 재생사업지구	용 적 율	161.62%
대지면적	12,674.5㎡	주차대수	164면(법정 161%) ※ 확장형주차49, 장애인주차5
건축면적	4,448.64㎡	규 모	지상6층
연 면 적	20,484.08㎡	최고높이	30.4m
구조하중	1~4층:1.2ton/㎡, 5~6층:0.6ton/㎡	층 고	1~3층: 5.5m, 4~6층: 4.0m
편의시설	구내식당, 신발인가배, 회의실, 세미나실, 기술지원실 등	승 강 기	화물용2대(5톤), 일반용3대, 리프트 1대(1~3층까지)

□ 소재지 :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43번길 235

### 2. 모집 개요

#### □ 모집대상

-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4층 큐브오피스(1개 호실)

#### □ 모집내용

- 큐브 오피스(CUBE OFFICE)

-입주가능 호실(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404호 창업공간) ▶오피스D(9.8평)

임대료 및 기타사항

○ 큐브 오피스(CUBE OFFICE)

(단위 : 원, 부가세 별도)

공장동 4층 큐브오피스	면적(m <sup>2</sup> )			임대보증금	월차임(a)	관리비(b)	합계 (a+b)	입주가능일
	전용	공용	합계					
오피스D	32.7	15.83	48.53	2,680,000	194,400	73,600	268,000	2025.11.20. 이후

※ 우리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임대공간 변경될 수 있음

- 임대기간 : 2년 ▶ 계약만료 시점 창업기업일 경우 심의를 통해 최대 2회(총 6년) 연장가능
- 임대보증금 :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합산액의 10개월분
- 각 호실별 개별 냉·난방 시설 구비 및 책상·의자 2개씩 제공
- 수도광열비(고정금액 부과)
  - 큐브오피스(호실당 35,000원/부가세별도)
  - 큐브(호실당 12,000원/부가세별도)
- 기타사항
  - 주차관리비는 “허브센터 관리규정” 에 따름

### 3. 입주대상

입주관리 방침

○ 관련근거

**근거 법령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**

- 법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- 법 시행령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에 의거 신발제조업, 신발유통업, 신발유관업종 등
  - ※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131호(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)

**<시설임대료>**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1항, 동 법 시행령 제7조 1항, 제14조, 제31조
-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3항, 제22조

○ 입주업종 : 신발제조업, 신발유통업, 신발유관업종 등

구분	한국표준산업분류		분류 코드	
	대분류	중분류		
신발 산업	C.15. 신발 제조업	151 신발완제품 제조업	1521	
		-	구두류 제조업	15211
		-	기타 신발제조업	15219
	G.46 신발 유통업	152 신발부분품 제조업	1522	
		461 신발 중개업	46103	
		464 신발 도매업	4642	
신발유관업종	474 신발 소매업	4742		
	디자인업, 도소매중개업, 무역·수출업, 제품개발업, 연구컨설팅업, 지원 및 학술연구기관, 신발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산업 등	-		

○ 입주제한 대상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‘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’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
-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
-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(도금업 등),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(피혁, 염색, 제지업 등),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(석유화학공업, 타이어제조업, 철강업, 시멘트제조업 등)은 입주제외

-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- 휴·폐업중인 자 및 입주기업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□ 입주자격

-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부산소재 신발기업
- 공동사항
  -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
  - 입주 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로 창업기업 본사 이전
  - 화재보험(대인, 대물 포함) 의무 가입

□ 입주계약 및 시기

- (입주계약) 입주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계약만료 도래 호실의 경우 입주 가능일을 기준 30일 전 임대차계약 체결
- (입주시기)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, 계약만료 도래 호실의 경우 입주가능일을 기준으로 함

## □ 가점사항

- 예비창업자(신발관련 업종 창업 희망자)(가점 1점)  
※ 선정 후 6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必

## 4. 신청방법 및 절차

### □ 접수방법

- 제출서류 교부 :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
  -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⇒ 공고.공지 ⇒ 사업공고
- 신청서류
  - 접수기간 : 2025. 10. 21.(화) ~ 2025. 11. 7.(금), 12:00까지 접수
  - 접수방법 : [sgkwon@btp.or.kr](mailto:sgkwon@btp.or.kr) ※접수처를 통한 이메일 접수만 가능  
(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문의처로 접수완료 여부 확인 필요)
  - 문의 :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 (☎051-317-8502)
  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할 수 있음

□ 추진절차

○ 심사방법

-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(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)
- 선정평가는 신청기업별 사업계획서 기반 PT 또는 비대면 서면심사 실시

○ 세부절차

절 차	주 요 내 용	비 고
입주신청서 제출	• 입주신청서 제출 및 사업계획서 제출	기업 → 허브센터
대면(PT) 또는 서면심사	• 입주신청서 서류 기재사항 검토 •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	입주기업 심의위원회
결과통보	• 입주심의 결과 개별통보	허브센터
계약체결	• 입주 계약 체결	허브센터
입주	• 허브센터 창업공간 입주 * 입주 후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 기재 등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음	허브센터 ↔ 기업

□ 제출서류

- 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
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최근 재무제표 및 기타 인증, 자격에 관한 서류 등

구 분		
제출구분	구 비 서 류	제출수량
입주신청	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PDF파일 각 1부
부속서류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	
	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	
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	
	최근 재무제표 1부 (해당업체 해당)	
	각종 인증서 사본(해당업체 한함)	

□ 심사기준

구 분		
심사절차	평 가 항 목	
대면평가(PT) 또는 서류심사	기업현황	대표자 전문성
		추진사업 현황 및 성과
		기술 및 제품 경쟁력 현황
		특허, 인증 확보 현황
	사업화 계획	입주 동기 및 목표
		기술 및 제품 개발 전략
		사업화 전략
		고용 및 매출 달성 계획

- 붙임 1.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.  
2.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. 끝.

**참고 1**    큐브 오피스(CUBE OFFICE) 도면



**참고 2**    큐브 (CUBE) 도면

